

#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14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3. 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개정이유

-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한 조례 통합으로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에 관한 사항이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흡수됨에 따라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 운영하기 위함.

##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”로 개정
-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

## 개정근거

- 경남도 행정 12200 ~ 42 ('98. 10. 20) 조례·규칙모델표준안

#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설치및”을 삭제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“제2조 내지 제5조”를 삭제한다.

“제6조 내지 제10조”를 “제2조 내지 제6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명</b>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<u>설치</u>및운영조례</p> <p><b>제1조</b> (설치) 저소득 계층의 자활,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.)을 둔다.</p> <p><b>제2조</b> (위치) 복지관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-2번지에 둔다.</p> <p><b>제3조</b> (업무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저소득 세대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</li> <li>2. 결손, 빈곤 가정의 가정문제 상담</li> <li>3. 부녀자의 교양교육, 취미교실 운영 등 건전가정 육성사업</li> <li>4. 영세 취업부부의 소득 활동을 돕기위한 탁아사업</li> <li>5. 영세가정 자녀상담, 학습 및 생활지도, 공부방 제공</li> <li>6. 어린이 기능교실, 예절교실, 심신단련 등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사업</li> <li>7. 청소년 문제의 상담, 교양교육, 레크레이션 등 전인적 인격형성 유도</li> <li>8. 청소년 기능교육, 취미교육, 독서실운영 및 사회교육</li> <li>9. 노인문제 상담, 불우노인 결연사업</li> <li>10. 노인 사회교육 및 건전한 여가지도</li> <li>11. 심신장애자 상담 및 서비스 사업</li> <li>12. 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, 행사, 여가선용 시설 제공</li> <li>13. 저소득층 무료예식장 제공</li> <li>14.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원 봉사자 육성</li> <li>15.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 업무</li> </ol> <p><b>제4조</b> (관장)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</p> <p><b>제5조</b> (공무원) 복지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</p> <p><b>제6조</b> 내지 <b>제10조</b> (생략)</p>	<p><b>제명</b>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</p> <p><b>제1조</b> 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 <p><b>제2조</b> 내지 <b>제6조</b> (현행과 같음)</p>